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3호
- 나. 발의자 : 김영한 의원
- 다. 발의일자 : 2014년 11월 14일
- 라.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상위법 제명 및 용어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며, “감안”을 “고려”로 하고 “출·퇴근”을 “출근·퇴근”으로 하며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신·증축”을 “신축·증축”으로 하며 “부여할”을 “줄”로 하고 “별도의”를 “따로”로 함.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 다. 기타 :

5. 검토의견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조항별 신·구 대비표〉

조항 구분	현행	개정안
제3조 중	별도의	따로
제5조 제5항 중	해촉	위촉해제
제5조 제5항 제1호 중	해촉을	위촉해제를
제7조 제3항 중	경과되지	지나지
제10조 제1항 중	감안	고려
제10조 제3항	출·퇴근하는	출근·퇴근하는
제11조 중	신·증축할	신축·증축할
제13조 제2항 중	부여할	줄
제14조 제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우선, 안 제14조 제5호의 내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 14일 시행된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음으로, 그 밖에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이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 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